조세 · 관세 주요 지원제도 안내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 목 차

1. 연구개발과 인력개발
2.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5.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감면
6.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7. 기술이전 소득감면
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9.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10.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11.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1. 연구개발과 인력개발

❑ 연구 :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당기비용으로 처리)

❑ 개발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이전에 / 연구결과나 관련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자산인식요건 충족시 무형자산으로, 이외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

❑ 연구개발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음 활동은 제외됨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 정보 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 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 탐사하는 활동
  -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인력개발

- 연구소/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

2.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1))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 ❑ 사용범위: 조특법 시행령 (별표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1) 자체 연구개발

①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②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 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 관련 비용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 대학(전문대학),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연구소 등,
산업기술연구조합,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산학협력단, 기술시험 · 검사 · 분석기업, 대학교수 등

(3) 직무발명보상금 지출금액, 기술정보비, 기술자문비,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4) 인력개발비

- 위탁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 생산성 향상 비용 등(연구소/전담부서 직원만 해당)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2.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2))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공제세액: 기업규모(대/중소)에 따른 차별적 적용

(1)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① 당해연도 발생액 × 25% ②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 × 50%

(2)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① 당해연도 발생액 × 8% ②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 × 40%

※ 중견기업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 미만인 기업

(3)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① 당해연도 발생액 × (3~4)% 단, R&D집약도 또는 R&D비용이 전년도 이상인 경우 선택

②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 × 40%

(4)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일반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

-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 : 15%
- 2년간(8~9년차) : 10%

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리스 제외)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 ❑ 적용범위: 연구시험 / 직업훈련시설, 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

(1) 연구시험용시설: 공구/사무통신기기, 시계/시험계측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적용자산

(2) 직업훈련용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서 연구시험용시설과 동일

(3) 신기술기업화 자산: 특허/실용신안 / NET 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 하는 경우 등

- ❑ 공제세액: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중소 10%, 중견 5%, 대기업 3%)에 해당하는 금액
- ❑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중복적용 배제, 농특세 적용 배제
  - * 연구시험/직업훈련시설 및 신기술기업화(대체투자에 한함): 과밀억제권역 공제가능
  - *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 당해 자산을 처분(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세액 등 추징
- ❑ 적용시한: 2015년 12월31일
- ❑ 감면실적: 1,635억 원(2013년 잠정) / 1,552억 원(2012년 실적)

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 지원대상: 미래창조과학부(산기협)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 ❑ 면제대상: 토지(건축물) 취득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 법인이 취득하여 이를 연구소로 임대하는 경우 면제대상 아님(직접사용에 한함)
- ❑ 면제세제: 취득세, 재산세
  - *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 *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면제가능(타용도 변경 時 해당 없음)
  - *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의 상황으로 면제여부를 판단함
  -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취/등록세 추징
- ❑ 적용시한: 2014년 12월 31일
- ❑ 감면실적: 495억 원(2012년) / 372억 원(2011년)

5.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90조)

- ❑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산업기술연구조합
- ❑ 감면물품: 매년 대상품목 고시(현재 220개 품목)
  - * 고시품목의 유효기간은 고시일(7월 1일) – 2014년도 고시 개정일까지
- ❑ 감면율: 관세액의 80%
- ❑ 특이사항: 연구개발용 시약 등은 품목고시 없이 관세감면 가능
  - * 시약 및 견품
  -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 관세감면 고시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 사후관리: 내용연수에 따라 최대 2년간 (무단양도, 용도 외 사용금지)
- ❑ 감면실적: 302억 원 (2013년 잠정) / 200억 원(2012년 실적)

6.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내국인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일정률을 당해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 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 ❑ 적용범위
  -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아래 기관을 통해 취득한 것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공제세액: 당해 취득금액의 7%
- ❑ 공제한도: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
- ❑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농특세 적용 배제
- ❑ 적용시한: 2015년 12월31일
- ❑ 감면실적: 2억 원 (2013년 잠정) / 9억 원(2012년 실적)

7. 기술이전 소득감면

내국인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 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 ❑ 적용범위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아래 기관을 통해 취득한 것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공제세액: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 ❑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농특세 적용 배제
- ❑ 적용시한: 2015년 12월31일

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이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적용범위: 조특법 제18조1항, 2항에 의해 두 경우로 적용가능

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 감면대상(산업계):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업종 경력 및 근무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 자로 당해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대상소득: 국내에서 고용계약 등에 의해 비독립적으로 제공한 근로대가
* 감면기간: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제2항: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조특법에 따른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대상소득: 국내에서 고용계약 등에 의해 비독립적으로 제공한 근로대가
* 감면기간: 해당 기술도입계약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이 속하는 달

❑ 적용시한: 2014년 12월31일

❑ 감면실적: 181억 원(2013년 잠정) / 223억 원 (2012년 실적)

9.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 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대상출연금**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출연금
- **익금산입방법**
  - (1) 연구개발비 지출: 비용을 지출한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 (2) 연구개발자산(감가상각자산) 취득: 감가상각비 상당금액을 익금산입(처분시 (3)과 동일)
  - (3) 연구개발자산(감가상각 이외의 자산) 취득: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 (4) 연구개발목적 이외의 사용: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 **적용절차: 과세표준신고시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제출**
- **적용시한: 2015년 12월31일**

10.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 ❑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 ❑ 적용대상: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 지정요건

(1) 연구소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

(2)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중 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 관련 첨단기술, 제품(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보유 및 생산 기업으로 총 매출액에서 첨단기술 매출액 30%, 연구개발비 5% 이상

- ❑ 감면범위 :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 한도: 총 투자금액의 50%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x 1천만원 or 투자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세제지원 한도 설정

- ❑ 적용시한: 2015년 12월31일

* 지방세 감면: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부산市 및 區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준비 중)

11.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중인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2조)

- 지원대상기관: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지원대상직원: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전담요원
- 비과세한도금액: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와 별개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함
- 감면실적: 475억 원(2013년 잠정) / 420억 원 (2012년 실적)